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1단계: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개설·운영하는 20시간 이상(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2단계: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옵션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10시간 이상의 교육(이하 “추가교육”이라 한다)의 파생상품 관련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거래과정(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 경험 있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1시간,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이 없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3시간, 투자성향 부적격 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10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 경험 있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3시간,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이 없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5시간, 투자성향 부적격 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10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시간 축소에 따른 조문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5③, ④ §119③ 제6호반영)

현 행	개 정(안)	비 고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거래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7호 반영)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제9호에 따른 추가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11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의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기본교육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옵션매도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지 않는 자로서 추가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삭 제>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 세칙 §119③ 제8호 반영)
12.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추가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거래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삭 제>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 세칙 §119③ 제9호 반영)
13. ~15 (생 략)	13.~15 (제13호→ 제11호, 14호,→ 제12호, 15호→ 제13호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생 략)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법'이라 한다)에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127③

현 행	개 정(안)	비 고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제3호 반영)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조문정비